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9.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11. 17.
- 회부일 : 2023. 11. 20. (의안번호 : 23-159)

2. 제안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
-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 추가(안 제2조)
- 위원 해촉 시 신규 위촉자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(안 제3조)
-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지명에 관한 조사 내용 삭제(안 제8조)
- 운영세칙 조항 신설(안 제11조)

-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-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안 개정내용

- 안 제1조에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하는 내용임.
- 안 제2조에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장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정비하는 내용임.

현 행	개 정
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	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(민간위원 6명 이내)
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	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

- 안 제5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 내용 변경임.
-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통지기한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안 제7조는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에 따른 간사 및 서기 변경하는 내용임.
- 안 제3조에는 위원 해촉 시 신규 위촉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안 제6조, 안 제11조는 서면 심의에 대한 조항 및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
6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한 규정 등 정비한 본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1. 16.] [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- 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3. 11. 16.] [대통령령 제33847호, 2023. 11. 7., 일부개정]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

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
촉 사유를 정할 것
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